

접도구역 관리지침 (안)

접도구역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정 '81. 8.27	운영 460-18157
개정 '82.12.30	운영 460-25997
개정 '85.12. 9	운영 3051-24220
개정 '87.11. 2	운영 30510-23463
개정 '89. 8.17	운영 30510-19077
개정 '90.10.25	도관 30510-27869
개정 '91.11.16	도관 30510-31884
개정 '93. 9.20	도관 58710-1051
개정 '99. 9. 3	도관 58710-800
개정 '01.10.17	도관 58710-903
개정 '02. 6. 3	도관 58710-413
개정 '02.12.26	도관 58710-948
개정 '13. 1. 7	도로운영과-59

1. 목 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경계선”이라 함은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구역(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

나. “취락지구”라 함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로서 준도시지역의 세분 용도지구를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다. “측도”라 함은 간선도로 등에 인접하여 나란히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라. “측구”라 함은 노면상에 내린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의 측방에 판 도랑을 말하며, 옆도랑이라고도 한다.

마.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이전·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3. 접도구역의 지정

가. 지정대상 도로

- (1) 고속국도
- (2) 일반국도
- (3) 지방도
- (4) 군도

나. 지정권자

- (1) 고속국도 : 국토해양부장관
- (2) 일반국도 : 국토해양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 (3) 지방도 : 도지사
- (4) 군도 : 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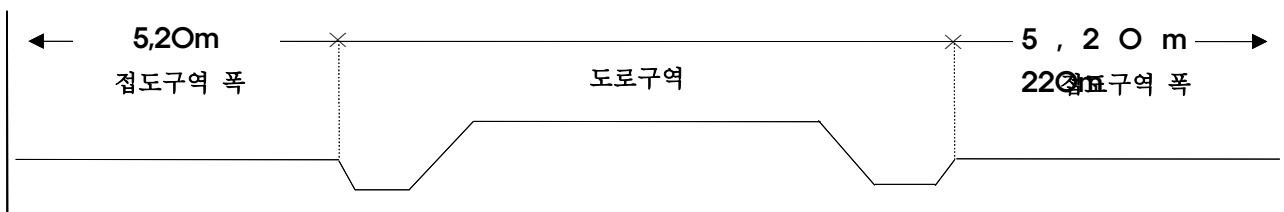
다. 지정기준

(1) 접도구역 지정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의 종류	구 분	지정폭(양측 각각)	비 고
고속국도	전구간	20m	
일반국도	전구간	5m	
지방도 및 군도	전구간 또는 일부	5m	

※ 접도구역 지정 보기



(2) 지정의 예외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교통 등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1) 해당 지역의 도로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예시도 1)

2)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예시도 2)

3)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예시도 3)

※ 도시지역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안의 도로는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3) 지정 폭 조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접도구역폭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가) 도로가 하천법상 하천 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유수면과 병행하는 경우 하천·공유수면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나) 도로와 철도가 병행하는 경우 철도선로인접지역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라.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각급 도로관리청은 사업시행구간, 사업완료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해제) 고시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1) 접도구역 지정(해제) 시기

(가) 지정시기

사업시행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와 동시에 지정하고, 사업완료구간 중 미지정 구간은 수시 지정

(나) 해제시기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고시와 동시에 해제하되,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될 때 해제

(2) 각급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접도구역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접도구역의 관리

가. 관리책임자(「도로법」 제20조)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사장(지역본부장)

(2) 일반국도·지방도·군도 : 도지사(시장·군수)

나. 관리책임자의 임무

(1) 시장·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의 임무

시장·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이라 한다)지역본부장은 접도구역 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기준에 의거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 다음 접도구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시·군과 읍·면·동사무소(도공은 도공지역본부와 도공지사)에 각 1부씩 비치하여야 한다.

1) 접도구역 표주관리대장(별지 32호 서식)

2) 접도구역안 기존건축물(공작물)관리대장 (별지 제33호 서식)
서식에 첨부된 사진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철인으로 압인하여야 한다.

3) 접도구역안 불법 건축물 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나) 매월 1회이상 접도구역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상태와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현지 점검하여야 하며 매 4월말과 10월말(년2회)에는 정기적으로 접도구역 관리상태와 행위사항 전반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 접도구역 표주는 망실, 파괴, 전도 또 위치가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퇴색된 표주는 즉시 재도색하되, 년 1회이상 도색하여야 한다.

(라) 불법행위 적발시나 불법행위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불법 건축물대장에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도지사(또는 도공사장)에게 보고와 동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및 도공사장의 임무

도지사 및 도공사장은 접도구역 관리업무를 다음 기준에 의거 지

도·감독하여야 한다.

(가) 반기 각 1회 이상 접도구역내 표주상태,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현
지 확인하고 시·군 및 도공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접도구역 관리대장에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나) 접도구역내 기존건축물 총괄표 등 각종 통계표를 접도구역 관리
현황 보고서에 의하여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3)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국토관리소장의 임무

(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접도구역 관리현황을 다음 기
준에 의거 확인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내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
도록 반기별 접도구역 관리 확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달하
여야 한다.

2) 반기별 접도구역 관리 확인계획에 의거 매 반기별로 이상 표
주(각종 표지판 포함) 및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확인,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국토관리사무소장(책임운영기관 포함)은 관할 구역내 도로 순찰
시에 접도구역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관리상태와 불법건축물 등 발생여
부를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시정토록 통보함과 동시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
게 보고하고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관리상태 확인·점검

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 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시에 이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5.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허용행위

가. 금지행위(「도로법」 제49조)

-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나. 허용행위

- (1) 도로법 시행령 제46조에 정한 사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나)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다)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라)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마)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바)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자)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차)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 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타)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파)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행위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나)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다)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마)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바)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사)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아)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자)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차)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카)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별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6. 보 고

가. 시장·군수 또는 도공지역본부장은 매년말 현재로 접도구역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도지사 또는 도공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지사 또는 도공사장은 매년말 현재로 접도구역 관리현황(별지 제 3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기 타

이 지침은 2013년 1월 00일부터 시행한다.